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011 ~ 50 |
|----------|-----------|

| | |
|-------|-------------|
| 제출연월일 | 2011. 7. 1. |
|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제정이유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그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마.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그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바.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제6장 보칙으로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81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104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추경예산 확보계획(195백만원), 2012년 본예산 확보계획(220백만원)

다. 합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법무통계담당), 주민생활지원실(복지정책담당)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 6. 8. ~ 6. 27.)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거창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하면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3.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4. “저상버스”란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영업용 및 자가용을 포함한 승합자동차 중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경사판 등을 장착한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제4조(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벽지 및 농촌 등 지역편차에 따른 이동편의증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촉위원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2명 이상으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2.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이에 준하는 전문가
3. 그 밖에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제14조(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 도입계획과 운행계획
3.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4.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계획
5.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6.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7.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제공 계획
8.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예산의 수립
9. 교통약자의 이동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10.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11. 농어촌버스 준공영제 시행 노선에 대한 교통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저상버스의 도입계획 및 운영) ① 군수는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퍼센트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을 농어촌버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지원센터

제16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④ 이동지원센터의 보유차량은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차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18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군수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1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최선을 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운영위탁기간 중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8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이동지원센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설치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
3. 수탁자가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의 시책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영위탁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21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2. 특별교통수단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거창군일 경우 경남도내 어디서든지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 예약 신청 및 장기 이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5.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다만, 농어촌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구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23조(예산의 확보) 군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